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8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김희정·서일준·박성민

백종헌 • 박준태 • 김승수

김태호 • 이인선 • 임이자

서지영 · 김은혜 · 곽규택

정성국 · 송석준 · 이철규

구자근 · 강대식 · 정연욱

박정하 • 이성권 • 권영진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 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한다.

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맞이 엄마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맞이 엄마휴가의 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하고,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아이맞이 엄마휴가기간"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과 제19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u>출산전</u>	<u>아이맞이</u>
<u>후휴가</u>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u>엄마휴가</u>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u>출</u>	⑥ <u>◊</u> }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이맞이 엄마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	7
내 또는 <u>36주</u> 이후에 있는 여	<u>32주</u>
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u>-</u>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할 수 있다.	

- ⑧ ~ ⑩ (생 략)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1. ~ 7. (생략)
 - 8. <u>출산전후휴가</u>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 13. (생략)

<u>.</u>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제95조(취합표적의 작성·선포) =
<u>.</u>
1. ~ 7. (현행과 같음)
8. <u>아이맞이 엄마휴가</u>
9. ~ 13. (현행과 같음)